

2023년 청탁금지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한 임직원 상담사례

□ 상담사례 1 - 경조사 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조문 상담

- 상담일자: 2023년 4월 19일
- 상담내용

Q) 최근 언론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결혼식 청첩장, 부고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원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직원 '애경사 소식'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경조사 통지가 가능합니다.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상담사례 2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진흥원 신고창구 안내

- 상담일자: 2023년 8월 8일
- 상담내용

Q) 동료직원이 규정(절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거 같은데, 직접 얘기하거나 부서장에게 얘기하기 힘들어 청렴감사실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느 창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신고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 청렴감사실로 신고할 경우, 청렴감사실에 직접 전화·메일을 보내거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소통창구(진흥원 상담, 제안·건의, 신고): 고충상담원(인재경영부, 활동협력부 운영), 인권침해구제(기획혁신부 운영), KYWA 핫라인(이사장 운영)

○ 부패등과 관련한 신고자 및 신고사실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그리고 청렴감사실 직원 또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감사규정 제18조 제5항)

□ 상담사례 3 -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선물 가액범위 관련 상담

○ 상담일자: 2023년 9월 1일

○ 상담내용

Q)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직무관련자들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선물가액 범위인 5만원 이하 선물을 돌릴려고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A)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에서 선물 제공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1])

- 다만,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있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해보아야합니다. 만약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